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수 신 : 사회부 및 법조출입기자

발 신 :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담당: 백미순 간사 723-5302)

제 목 :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개혁안 발표

날 짜 : 1999. 12. 3(총1쪽)

보 도 자 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사법개혁을 촉구한다

사개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반박토론회

1999년 12월 3일(금) 13:00, 사법개혁을위한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1.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2월 3일(금)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2. 연대회의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사법개혁안에 대응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개혁안counter report>을 준비해왔으며, 이 안을 공론화하여 시민이 사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우리사법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일조하여 관료중심의 사법구조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3. 연대회의는 발표를 통해 '이번에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법조인 양성제도나 법조비리 근절 등에 대한 '사법개혁안'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방향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법개혁의 근본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개혁방안이나 시민의 사법참여방안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번 개혁안이 검찰·법무부 주도의 사개위의 한계로, 그 대로 드러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의 반박리포트는 별첨과 같다.
4. 연대회의는 다음주부터 사회지도자, 법조인, 법학교수등이 참여하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집회, 대통령 면담추진 등을 통해 이번 사
개위 안의 문제점을 알려나가는 한편, 제대로된 사법개혁을 촉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별첨1.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반박보고서 요약(1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민가협,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
연구회, 서울YMCA,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한국노
총,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농업경영인증양연합회, 행정개혁시민연합,

<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 평가 >

1. 사개위 구성과 활동상의 문제

- 1) 범조 중심의 구성, 법무부·검찰의 사실상 주도
- 2) 밀실적 논의과정
- 3) 요식적인 공청회

2. 논의의제 및 중점 활동상의 문제

1) 검찰개혁이 없다

- 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논의 부족
- ② 국민적 관심사인 특검제에 대하여는 기존 검찰의 반대논리를 그대로 답습.

2) 시민이 없다

- ① 시민은 사법의 주체
- ② 시민의 사법참여 논의조차 없는 것은 현행 사법개혁이 오직 범조인 중심임을 보여줌.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주장>

1. 범조인 양성제도

- 1) 국립사법대학원제 - 시대착오적 범조사관학교적 발상 !
- 2) 위험적인 정원제 사법시험 폐지하고 범조인(변호사)자격시험으로 대체해야 한다.
- 3) 시험보다는 교육에 의한 법률가 양성제도로 전면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 4) 범조일원화 - 관료적 임용·승진이 아닌 시민사회 속에서 법률가가 나와야 한다.

2. 범조비리 근절방안과 법률서비스 질적 향상

- 1)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모든 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제 도입하고 전관예우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수임 제한'규정을 도입한다.
- 2) 수임료의 투명화를 위해 보수계약의 투명화와 실질과세를 실현하고 성공보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3)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재조범조인력을 증원하고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

을 권리를 확대한다.

- 4) 긴급체포제도의 폐지와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 확대 등 인신구속제도를 개혁한다
- 5) 법률구조 대상의 확대하고 변호사의 공익적 활동을 증대한다.

3. 검찰·법무행정 혁신

- 1)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특별검사제의 상설화 및 검찰조직과 별개의 상설적 공직자비리특별조사처를 신설한다.
- 2) 검찰의 공안기능을 순수 대공분야에 한정하고 공안대책위원회는 폐지, 국가보안법을 전면적으로 개폐한다.
- 3)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검사 임명권을 검찰청으로 이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실질화·개방한다.
- 4) 검찰조직의 민주화를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구속승인 제도 폐지하고 내부결제 제도 및 검찰사무 보고제도 축소한다.
- 5) 재정신청범위의 원상회복하고 검찰권에 대한 제도적 시민적 통제를 위해 검찰심사회 도입한다.
- 6) 경미한 범죄에 한하여 경찰에게 수사권을 분배하고, 경찰의 수사권남용 통제장치를 마련한다.
- 6) 법무행정 혁신

4. 사법과정에서의 시민참여

- 1) 법관인사제도에서의 참여: 대법관의 임용자격을 확대·개방,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인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와 시민참여 확보 필요
- 2) 사법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참심제와 배심제 등 도입
- 3) 사법기능과 시민의 사법참여: 제소과정과 시민참여, 소송 외 분쟁해결절차에서의 시민참여
사법절차의 투명성강화의 당사자참여폭의 확대 필요
- 4) 우리나라 시민의 검찰 참여: 상설적 특별검사제도입, 검찰심사회제도 도입
- 5) 각종 사법관련 위원회에 시민참여